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11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한정식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3. 체결된 상속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 중 2/9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17. 소외 F으로부터 F이 소외 E 외 2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875 대여금 판결에 기한 채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양수(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11. 9. E 외 2인을 상대로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21차전2649 양수금)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E에 대하여 2022. 1. 1. 확정되었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 피고 B와 사이에 E, 피고 C, 피고 D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2016. 6. 1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E은 2020. 1. 23.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피고 B이 3092/3588 지분, 피고 C이 496/3588 지분 소유로,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피고 C, D가 각 1/2 지분 소유로, 이 사건 제5, 6 부동산은 피고 C의 단독소유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1. 23. 피고들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E은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라. H은 2020. 3. 15. 피고들을 상대로 “H이 E에 대하여 공사대금 관련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E과 피고들 간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E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708호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2. 21. H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 7.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마. 이후 H은 2022. 6. 28. E과 종전 소송의 판결에 따라 E이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E이 H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H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는 원고는 2022. 8. 22. 이 사건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H은 2003. 7.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 및 사원으로 원고 회사의 경영 및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는 자로서 2020. 3. 15.경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H은 적어도 종전 소송의 소제기일인 2020. 3. 15.경에는 E과 피고들 간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도 2020. 3. 15.경에는 이 사건의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도래한 2022. 8. 22.경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다) 한편 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5. 7. 14.경 설립되었고 H은 2003. 7. 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된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원으로서 원고의 경영 및 운영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를 하고 있는 사실, ② H은 2021. 10. 1.경 원고를 대표하여 E 외 2인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의 송달장소도 H의 주소와 동일한 바 H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H은 2020. 3. 15.경 자신의 E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과 피고들 간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E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표자로서 원고의

업무를 담당한 H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H은 적어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인 종전 소송을 제기한 2020. 3. 15.경에는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도 2020. 3. 15.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인 2020. 3. 15.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2. 8. 22.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